

---

#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 컨설팅 자원사업 운영자침

---

2025. 02.

## 김포산업지원센터

사업부서장	기업육성팀	박노현	팀장	☎ 070-4269-4084
-------	--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

# 목 차

1. 목적 .....	1
2. 용어의 정의 .....	1
3. 추진체계 .....	2
4. 추진절차 .....	4
5. 신청·접수 .....	5
6. 전문가(컨설턴트) .....	7
7. 평가 및 선정 .....	8
8. 수행 및 결과 제출 .....	10
9. 지원금 지급 .....	11
10.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.....	11
11. 시행일 .....	12

# 1

## 목적

- ‘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
# 2

## 용어의 정의

- “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”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환경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
- “전담기관”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지원센터를 말함
- “기업지원단”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·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 분야별 「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(Pool)」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
- “평가위원회”라 함은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인 이상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
- “참여기업”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 과제를 신청 또는 신청 예정인 중소기업을 말함
- “과제책임자”라 함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·직원

### 가. 추진체계도



### 나. 전담기관

-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담당 업무
  -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
  - 사업신청서 접수·검토 및 평가
  -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
  - 사업의 점검 및 서류 접수 및 검토
  - 기업지원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  -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
  -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### 다. 평가위원회

-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를 위하여 기업지원단 Pool을 활용하여 위원

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산·학·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 
평가위원회를 구성

-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
- 참여기업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, 지원금 확정
- 참여기업의 과제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과제 내용 변경 및 조정심의

**<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>**

구 분	전문가 유형
경영, 인사,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	·교수 ·유관기관 전문가 ·국가공인자격 소지자 ·기타(실무경력자, 기업대표 등)
정책 연구	
생산·공정·품질 및 연구개발	
4차산업	
창업 보육	
특허 및 기술사업화	

**라. 참여기업**

-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
  - 기업SOS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주도
  - 기업SOS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활동 수행
  -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
  -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
  -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
  - 사업만족도 조사(설문) 참여
  -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

# 4

## 추진절차

### ○ 추진절차별 내용

추진단계	추진방법	비고
추진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 추진 계획 수립</li> <li>- 사업개요, 사업세부내용(지원대상, 추진절차 등) 등</li> </ul>	센터
공고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</li> <li>- 공고문, 신청서 양식</li> </ul>	센터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</li> </ul>	센터/ 유관기관
서류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신청서 제출(온·오프라인)</li> <li>※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</li> </ul>	중소기업 →센터
서류 검토 및 정량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</li> <li>● 기업별 정량평가(서류평가) 실시</li> </ul>	센터
정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평가위원회를 3~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</li> <li>● 참여기업 예비후보 선정</li> </ul>	평가위원회
선정 및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여기업 최종 선정 및 안내</li> <li>※ 중복수혜 / 행정처분 여부 조회</li> </ul>	센터 →중소기업
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업별 과제 수행(공모사업별 기간 상이)</li> </ul>	중소기업
결과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컨설팅 결과물 제출</li> <li>※결과보고서, 컨설팅 일지 등</li> </ul>	중소기업 →센터
사업지원금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</li> </ul>	중소기업 →센터
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교부신청서 확인 및 교부결정 통지</li> <li>● 사업지원금 지급</li> </ul>	센터 →중소기업
사업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</li> </ul>	센터

## 가. 공고

-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지원센터,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
- 전담기관은 전자신문, 현수막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
-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
  -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
  - 신청자격, 신청요건, 평가기준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## 나. 신청대상

### □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

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
  - 기업 운영환경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
  - 관련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 솔루션을 제공받아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

### □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
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
-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-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,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

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(기업, 기업대표, 과제책임자)

- 공고일 기준,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
-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
#### 다.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

##### □ 지원분야

- 지원내용 : 전문가의 현장 방문·진단을 통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

##### □ 지원조건

- 지원금은 전문가 활용 비용의 100% 이내로,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

협약·착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참여기업과 컨설턴트간 컨설팅 일정 및 방향성 합의</li><li>• 500,000원/1일 × 10회이상 = 5,000,000원(전문가 자격기준 3등급 이상)</li><li>※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수행이 원칙(1일 4시간 이내)</li></ul>
회차별 컨설팅 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추진계획에 따른 회차별 컨설팅 수행(10회 이상)</li><li>• 컨설팅 회차별 자문 일지 작성(사진 포함)</li><li>• 컨설팅 종료 후 모니터링 및 솔루션보완 컨설팅(3회 이상)</li></ul>
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컨설팅 일지, 최종보고서,</li></ul>

- 참여기업 지원 목표는 20개사 내외로 하며,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

#### 라. 신청방법

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([www.gopa.or.kr](http://www.gopa.or.kr))에서 공고문 확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(이메일 및 오프라인)
- 사업신청서류



사업 신청서류	○ 사업신청서 [서식1]						
	○ 개인·기업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 [서식2]						
증빙서류	○ 사업자등록증명						
	○ 공장등록증명(해당시)						
	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					
	○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					
※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	○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<b>&lt;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&gt;</b>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시근로자 없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 <li>▪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상시근로자 있음 (택1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li> <li>▪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</li> <li>▪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제출서류	상시근로자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 <li>▪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</li> </ul>	상시근로자 있음 (택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li> <li>▪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</li> <li>▪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</li> </ul>
	구분	제출서류					
상시근로자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 <li>▪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</li> </ul>						
상시근로자 있음 (택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li> <li>▪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</li> <li>▪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</li> </ul>						
○ 전문가 재직증명서/이력서 1부 ※전문가 없을 시 미제출							
가점서류 (해당시 제출)	○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(사업) 수행실적 - 수행실적서, 협약서, 계약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	
	○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-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- 연구인력 학위증명서(석·박사)						
	○ 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발급 자료						
	○ 기타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([서식1]신청서 참고)						

## 6 전문가(컨설턴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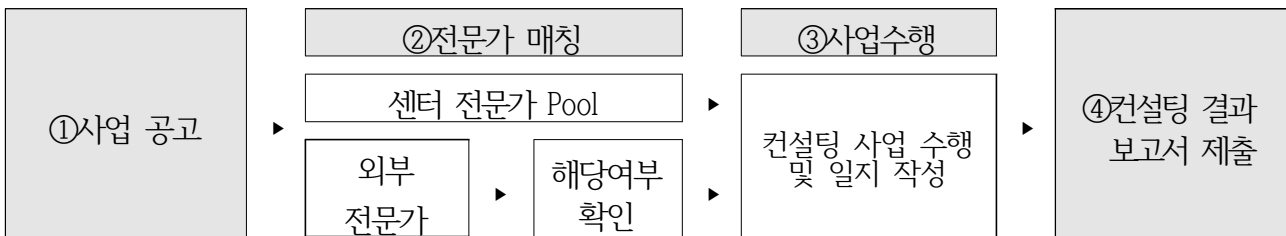
### 가. 전문가 매칭

- 기업SOS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섭외
  -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턴트,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교수 및 전문가를 활용 기업 애로사항 솔루션 제공
- 컨설턴트는 ‘전문가 기준 3등급 이상’에 해당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

등급	경력 기준	계(원)	추가인정 기준
특급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985,000	· 박사학위 소지자 : 경력 6년 인정 · 석사학위 소지자 : 경력 2년 인정 ·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: 경력 6년 인정 · 경영.기술지도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 : 경력 3년 인정
1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834,000	
2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757,000	
3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644,000	
4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518,000	
5	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388,000	

## 나. 전문가 활용

### ○ 매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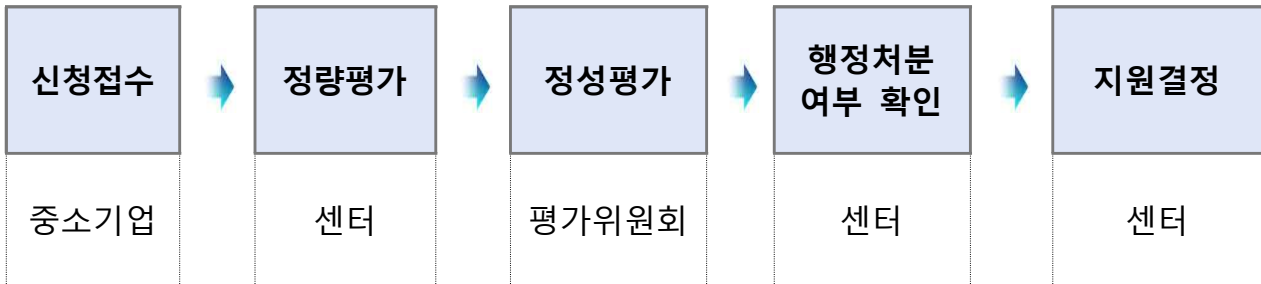


### ○ 전문가 활용비 지급을 위한 결과보고서 및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

- 결과보고서는 기업과 전문가가 같이 작성하며, 일지는 전문가가 작성(양식 별도 배포)
- 현장 방문·진단을 통한 김포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기업 수요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 애로사항을 진단, 해결방안 제시, 자문 활동을 수행
- 컨설팅 일지, 최종 보고서 제출, 애로사항 솔루션 보완 컨설팅 수행

### 가. 선정절차

-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
  -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



### 나. 서류심사

-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서류평가표[별표2]와 아래 사항을 확인
  -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
  -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
  - 참여기업 및 기업 대표의 신용불량 여부, 제재 대상 등

#### <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>

- ① 중복성 판단요소 : 개발목표, 개발방법, 개발내용
- ② 중복성 판단기준 :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
-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: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
 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
  -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<http://www.smtech.go.kr>)
  - 경기도 R&D 기술개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step.re.kr>)
  -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

-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

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

### ○ 서류검토 결과는 30%의 비중으로 반영(정량평가)

-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조회 및 확인
  - 환경관련 단속, 위반건축물 관련 조회, 지방세 체납 여부

## 다. 심사 및 선정(선정평가위원회)

- 지원업종별 전문가로 분야별 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최소 3인 이상 구성
-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
-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,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
-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하되,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
- 평가내용[별표3]
  - 사업의 지원 필요성
  - 사업의 적정성
  - 사업 기대효과
-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 및 서면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이상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
-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, 정량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
-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
- 전담기관은 지원과제 선정 이후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

## 8

## 수행 및 결과 제출

### 가. 과제수행

- 참여기업은 신청서류 및 협약서에 따라 2025년도 내에 기업 컨설팅을 완료 하여야 함
  - 참여기업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포기신청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  -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라 포기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포기 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### 나. 결과제출

- 참여기업은 SOS컨설팅 완료후 다음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  - 결과보고서(서식 제공)1부
  - 컨설팅 일지 1부
  - 컨설팅 수당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  - 컨설팅 수당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
## 9

## 지원금 지급

- 전담기관은 결과보고 기준으로 과제 완료 여부를 정하며, 완료된 기업에 한 해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을 요청
-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[서식4] 및 다음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
  -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내역서(견적서, 거래명세서 등) 각 1부
  -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지출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입금증 등) 각 1부
  - 통장사본 1부

- 전담기관은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

## 10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

- 전담기관은 평가, 선정 등 동 동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

<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표>

구 분	지급기준	지급액(원)
선정수당	1부당 2만원	(20개사 선정기준) - 2만원 x 10부 = 20만원 ※(참고)최대 30만원

## 11 시행일

-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

서식번호	제목
[서식 1]	사업 신청서
[서식 2]	개인·기업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[서식 3]	사업 협약서
[서식 4]	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
[별표 1]	지원제외 대상
[별표 2]	서류평가표
[별표 3]	선정평가표

[서식1] 사업신청서

〈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〉

1. 신청내용

신청 기업 현황				
기업 현 황	기업명		대표자	
	설립일자		사업자등록번호	
	업태/종목		업종코드	
	주생산품		주요 보유설비	
	상시종업원수		전년도 매출액	
신청 자	과제책임자명		전화번호	
	부서 / 직책		이메일	
소재 지	본사			
	사업장(공장)			
가 점 사 항	과제 수행실적	총 0 건	연구인력 보유현황	총 0 명
	우대사항 (해당시 체크)	<input type="checkbox"/>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친화경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우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INNO-BIZ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MAIN-BIZ기업	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기술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NET 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NEP 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김포시 청년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김포시 우수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부설연구소
신청 내용				
신청 사 항	컨설팅 희망분야	예시) 금융, 공정개선, 마케팅, 유통, 교육, 기술개발 등		
	기업애로사항			
	컨설턴트 전문분야			
전문가 활용 내용(컨설팅)				
전문 가	성명		소속	
	직위		연락처	
컨설팅 소요비용 ※부가세 제외		총 0 원	컨설팅 횟수	총 0 건



## 2. 세부내용

추진내용	
기업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혁, 주요사업, 강점(생산품, 기술, 시설)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</li> <li>※ 1/2페이지 이내</li> </ul>
과제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애로사항을 간략히 기재</li> <li>○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 애로사항으로 인한 문제점</li> <li>-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컨설팅의 목적과 필요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요성 : 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가?(구체적으로 작성)</li> <li>- 목적 :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(구체적으로 작성)</li> </ul> </li> </ul>

기대효과	※ 컨설팅 기대효과 (신규 기술 개발, 매출증대, 일자리 창출 효과 여부 등) 작성 -
------	--

컨설팅 내용	※ (컨설팅 중점 내용(애로사항, 해결방법, 절차 등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진행일정**

추진내용	세부 추진일정					
	월	월	월	월	월	월
. 예시) 공모사업 공고						
. 예시) 사업계획서 작성						
. 예시) 선정절차 진행						
. 예시) 결과보고						
완료 예정일	2025년 월 일					

위와 같이 「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」을 신청합니다.

2025. 00. 00.

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

**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**

**[서식2] 개인·기업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**

**개인·기업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**

업 체 명		사업자번호	
대표자명		E-Mail	
전 화 번 호		휴대전화	

**<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>**

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.

**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**

수집·이용 목적	사업의 지원대상 평가, 선정 후 연락·확인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이름, 이메일, 연락처(휴대전화) 회사명, 회사주소(본사/지사), 회사사업자등록번호, 부서명, 직위/직책
보유·이용 기간	영구(단,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)
보유·이용 근거	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
추가 수집 항목	행정처분 여부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**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**

제공 목적	지원사업의 실적(성과)보고 등에 활용
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이름, 이메일, 연락처 : 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, 회사주소(본사/지사), 회사사업자등록번호, 부서명, 직위/직책
제공 기간	영구
제공받는 기관	중앙·지방정부 및 산하기관,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
제공 근거	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
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「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」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5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회사명 :

대표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**[서식3] 사업 협약서**

#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

(재)김포산업지원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는 『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』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.

사업명	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			
과제책임자	소속		직위	성명
협약기간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			
협약금액	총 원 (컨설팅 횟수 : 최소 00건)			
협약자	구분	소속	직위	성명
	전담기관	김포산업지원센터	센터장	
	참여기업		대표	
	전문가			

## 제 1 조【목적】

이 협약은 (재)김포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이 시행하는 「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」(이하 “사업”) 수행에 관하여 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## 제 2 조【협약의 범위】

센터와 참여기업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약한다.

---

①(협약 목적)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수행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이행을 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②(사업 수행)

1. 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는 협약서, 사업신청서, 공고문,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2. 참여기업은 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③(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)

1.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협약서 및 사업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2.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컨설팅 비용 전액을 전문가에게 선지급하며, 추후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4. 전담기관은 결과보고 내용에 따라 과제완료여부를 평가하며, 과제 완료된 참여기업에 한하여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을 요청한다.
-

- 
5. 전담기관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.
  6. 참여기업에 의해 본 협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# ④(관련자료 제출)

1. 참여기업은 센터가 사업과 관련된 자료,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2.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센터가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,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⑤(협약 변경) 센터와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⑥(협약 해지) 센터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부도, 폐업 등의 경우
2.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
3. 사기,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5.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
6.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
⑦(기밀유지) 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참여기업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.

#### ⑧(관계규정의 준수)

1.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,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기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.

#### ⑨(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)

1.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「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」에 협조하여야 한다.
2.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「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」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⑩(기타) 그 외 사업의 수행 절차는 센터의 「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른다.

---

**제 3 조【기타사항】**

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 4 조【협약의 효력】**

협약서는 센터, 참여기업, 전문가 각 1부씩 보관하고,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(날인)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2025년 00월 00일

전담기관: (재)김포산업지원센터      센터장      (인)

참여기업:      대 표      (인)

전문가:

#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

## 1. 신청인

참여기업		대표자	
연락처		과제책임자	
소재지	(본사)		(공장)

## 2. 신청 내용

과제명			
총사업비	사업지원금	기업부담금	
천원	천원	천원	
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			천원

## 3.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
※ [첨부서류]

1. 최종 결과보고서 1부.
2. 통장사본 1부.
3. 컨설팅 비용 내역 서류 사본 각 1부 ※견적서, 거래명세서 등
4. 컨설팅 비용 지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※전자세금계산서, 영수증(입금증) 등

「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」 결과 제출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   월    일

참여기업 :

대 표 자 :

(인)

**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**

**[별표1] 지원제외 대상**

**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**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
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
-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-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,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(기업, 기업대표, 과제책임자)
- 공고일 기준,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
-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


**[별표2] 서류심사표**

**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서류평가표**

평가일 : 2025 . . .

참여기업명		대표자	
소재지	본사:	검토자	(서명)
	사업장(공장):		

기업현황 심사				
평가항목	배점	평가기준	평점	
참여기업의 매출규모(30점)	30	-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상		
	25	- 전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~ 30억 미만		
	20	-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 ~ 20억 미만		
	15	- 전년도 매출액 5억 이상 ~ 10억 미만		
	10	-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		
상시 종업원수(20점)	20	- 15명 이상		
	16	- 10명 이상 ~ 15명 미만		
	12	- 5명 이상 ~ 10명 미만		
	8	- 3명 이상 ~ 5명 미만		
	4	- 3명 미만		
김포시 산업 기여도(30점)	30	- 관내 사업활동 기간 10년 이상		
	25	- 관내 사업활동 기간 5년 이상 ~ 10년 미만		
	20	- 관내 사업활동 기간 3년 이상 ~ 5년 미만		
	15	-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이상 ~ 3년 미만		
	10	-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미만		
참여기업의 연구인력 보유(10점)	10	- 상시근로자 석·박사 인력 2명 이상		
	5	- 상시근로자 석·박사 인력 1명		
	0	- 없음		
기업부설연구소 보유(10점)	10	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		
	0	- 없음		
가점 (최대10점)	경기도 유망중소기업	2	-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	
	가족친화경영기업	2	- 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	
	일자리우수기업	2	- 경기도 일자리우수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	
	INNO(main)-BIZ기업	2	-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(경영)혁신형 중소기업	
	녹색기술인증기업	2	-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기업	
	NET, NEP 인증기업	2	- 신기술 혹은 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업	
	사회적기업	2	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	
	벤처기업	2	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	
	여성기업	2	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	
	장애인기업	2	-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	
	김포시 청년기업 인증	2	-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	
	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	2	-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	
<b>합 계(100점)</b>				

**[별표3] 선정평가표**

**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선정평가표**

평가일 : 2025 . . .

참여기업명		대표자	
소재지	본사:	검토자	(서명)
	사업장(공장):		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배점					계
지원 필요성 (40)	○ 사업 동기 명확성 및 컨설팅 필요성은 적정한가?	15	12	9	6	3	
	○ 기업의 환경에 맞는 컨설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가?	15	12	9	6	3	
	○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가?	10	8	6	4	2	
적정성 (30)	○ 신청기업(컨설팅기관)의 추진체계 및 진행계획은 적정한가?	10	8	6	4	2	
	○ 컨설팅 비용은 적정한가?	10	8	6	4	2	
	○ 기업의 준비는 적절한가?	10	8	6	4	2	
기대 효과 (30)	○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컨설팅 추진 계획을 과부족 없이 설정하고 있는가?	10	8	6	4	2	
	○ 컨설팅 내용에 따른 구체적 성과계획이 있는가?	10	8	6	4	2	
	○ 본 사업(진단컨설팅)을 통한 기대효과가 적절한가? (연구개발, 사업화, 수요처 확대 가능성 등)	10	8	6	4	2	
총합 (100)							

평가의견